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

-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로, "결과에 따라"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의"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를 "위험성평가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을 "원인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을 "근로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로 한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